

의안번호	제727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7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의자 :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변종오

### 1. 제안이유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한 출산 지원 및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3. 조례안 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원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
5.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위기영아의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상담 등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철회,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임산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 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14조의 위기임산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보호자로부터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3.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를 판단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담기관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도 소속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보호출산제로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아동유기를 방지해 아동과 산모의 건강·생명 보호
-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경제적·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안전한 출산 통로 마련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보호자의 안전한 보호출산 유도

##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상담기관 운영(위기임산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상담·정보제공·서비스연계 지원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일체(조례 제5조)
- 보호자신청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참석 수당 일체

## 3. 관련조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상담기관 인건비 2명(전담인력) 및 관련 제수당 필요(당직 근무)
- 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등 일체 비용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5인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월 1회)

나. 추계 결과(2025년)

- 지역상담기관 인건비 등 운영비 : 126,700천원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 6,1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매칭 및 도비 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043-220-39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국 비 (지역상담기관 운영)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세 출		91,450	132,800	132,800	132,800	132,800	622,650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85,350	126,700	126,700	126,700	126,700	592,150
국 비(70%)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도 비(30%)		17,070	38,010	38,010	38,010	38,010	169,110
보호자신청심사 위원회 참석 수당		6,100	6,100	6,100	6,100	6,100	30,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보조금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자체 수입	소 계	23,170	44,110	44,110	44,110	44,110	199,610
	세외수입	23,170	44,110	44,110	44,110	44,110	199,610